

유엔 위원회: 대한민국, 필리핀 인신매매 피해 여성 세 명의 보호 및 효과적 사법 접근 보장 의무 다하지 않아

제네바 (2023년 11월 24일)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강제 성매매를 당한 세 명의 필리핀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에 실패하고, 사법 및 충분한 구제방안 접근을 보장하지 않아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A.L.P., A.M.E., F.F.B.가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한 후 오늘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공개했다. 해당 필리핀 여성 세 명은 공연 활동 목적의 E-6-2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세 명 모두 2014년 여름 가수로 고용되었다. 두 명은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한 명은 노래경연대회에 출전하고 마닐라에 위치한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 면접을 거친 후 고용되었다.

이들은 공연업에 종사하고자 했으나, 서울의 골든게이트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들은 감금당하고, 결국 고객 상대로 성적 향응을 제공하게 되었다. 클럽 소유주는 여권을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 3월 골든게이트 클럽을 단속하면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들을 성매매 혐의로 심문했는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rinne Dettmeijer-Vermeulen 위원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Dettmeijer-Vermeulen 위원은 “제출된 정보에 의하면, 여권 압수, 클럽 소유주에 대한 두려움, E-6-2 비자 등 인신매매로 볼만한 요소가 많았으며, 경찰관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해 사실을 알아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명의 필리핀 여성은 경찰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밝혔으나, 이들은 성매매에 관한 조사만 받았다.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또는 경찰관 중 이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거나 여타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질문한 사람은 없었다.

여성들은 40일간 구금되고 2015년 4월에 출국명령을 받았다. 필리핀으로 추방 당할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에 불리한데,

해당 법적 절차는 이들의 재활(rehabilitation)에 필수적이다. 이들은 2015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기각되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도 항고했으나 2018년 각하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소진한 피해자 세 명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집행 및 출입국 당국이 젠더 기반 폭력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고 이는 젠더 기반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출국명령으로 인해 유의미하게 대한민국의 국내 사법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형사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 있었던 사법부의 젠더 편견 및 차별 때문이라는 혐의를 제기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수사 및 사법절차를 거치는 동안 차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사법 접근 및 충분한 구제방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상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Dettmeijer-Vermeulen 위원은 “동 사건의 경우, 경찰 및 법원의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파악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사법 접근권을 거부당했기에 형사사법제도에 의한 2차 피해도 입었다”고 덧붙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제공하도록 대한민국에 요청했다. 또한 해당 당사국이 현행 E-6-2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유흥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무고한 여성과 여아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지 않도록 힘쓰는 등 인신매매 단속으로 인해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연루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다.

끝

추가적인 정보 및 제네바 내 언론사 문의는 Vivian Kwok (vivian.kwok@un.org) 또는 유엔 인권사무소 미디어 담당 부서 (ohchr-media@un.org)로 문의 주십시오.

배경: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의 협약 준수 여부를 살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은 총 [189](#)개국입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권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독립 인권전문가입니다. 각각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특정 당사국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해당 협약상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 관할 하의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살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현재까지 [115](#) 개 국가가 해당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진정 관련 개별 통보건에 대하여 당사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인권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견해를 제시하고 관련 결정을 내립니다.